



製造物 責任法(PL법)과 골판紙包裝 製造者 責任論 解説

중소기업연수원
교수 이 환 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차</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물 책임(PL) 시대의 도래 2. 제조물 책임(PL) 법(안)의 해설 3. 골판지 포장업체의 대책 4. 맺는 말

1. 제조물 책임(PL) 시대의 도래

(1) 무과실책임 시대

지난 7월 재정경제부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도 “무과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려 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법의 “과실없이 책임없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사용자)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으나, PL법이 도입되게 되면 고객은 제품에 결함(하자)이 있었고, 그 원인으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게 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PL법 입법 현황

이와 같은 고객(소비자) 중심 사상에 기초한 제조물책임법은 1960년대 미국에서 먼저 판례 형태로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유럽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문법

구 분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시대	근대 이후 생산자 중심의 대량생산 시대	20C 중반 이후 소비자 보호 시대
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결함 책임의 원칙
책임 요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입증 사항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주관적 사실)	제품에 결함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객관적 사실)
책임을 지는 자	과실이 있는 자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
배상 방법	손해를 진 자에게 금전배상(당해 손해)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금전배상(확대 손해)
관련 법규	민법(일반법)	제조물책임법(특별법)

의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비 유럽 지역까지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오랜 논란을 거쳐 금년 7월에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의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01년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제조물 책임(PL)법(안)의 해설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안)은 본문 11 개조와 부칙 2 개조로 된 미니 법률이다. 그 내용은 다른 나라의 법안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다. 여기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은 생략하고 내용을 알기쉽게 해설해 보고자 한다.

(1) 법 제정의 목적

PL법의 제정 목적은 고객(소비자)의 보호이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그 제조물을 제조하고 유통시킨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무과실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배상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부터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한하며, 손해가 그 제조물에만 국한된 경우는 PL법의 대상이 아니라 종전의 민법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TV가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불에 탔으나 다른 피해는 전혀 없고 TV만 소실된 경우 TV 제조업체는 PL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조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TV만 탄 게 아니고 가재도구는 물론 집이 소실되고, 그 불이 이웃으로 번져 큰 화재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히 PL법의 대상이 되어, TV 제조자는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TV 자체도 PL 대상이 되어 함께 배상받게 된다는 점이다.

(3)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

이 조항은 PL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매우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외되는 것을 알아 보면,

①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② 미가공의 자연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렵물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③ 무체 서비스 : 교육, 의료, 행정 등의 서비스 행위

(4) 책임을 지는 자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당해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자이다. 이 법의 제정취지로 보아 직업으로 그 제조물을 제조, 가공한 자로 해석된다. 즉,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만든 제품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본품, 시제품 또는 출품작과 같이 무상으로 제공된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의 일부이거나 보조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PL대상이 된다고 본다.

제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한 자도 대상이 된다. OEM방식이나 PB 방식으로 제조된 제조물은 주문자가 1차 배상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제조자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당하게 될 것이다.

당해 제조물을 수입한 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수입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외국의 제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법원의 관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을 수입한 자(수입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게 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제조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자, 즉 유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5) 결함이란?

결함의 상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의 사례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제조물이 원래 가져야 할 성질을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식칼을 사용하다가 손을 벤 경우, 칼날이 예리하다고 해서 제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물건을 베는 것이 식칼의 기능이므로 칼날이 예리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완구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식칼을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예리한 칼날에 손을 베었다면 당연히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용도로 제조물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야외용 폭죽을 실내에서 터뜨려 천장이 타고 가구에 불이 붙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용 방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방법이 아니므로 제조자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생일 케이크에 첨부된 소형 폭죽을 터뜨려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케이크에 첨부된 폭죽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폭발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조자가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를 결함의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은 어떤 제품이 출하된 후 그보다 안전성이 더 높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 발매되었을때 먼저 출하된 제품을 결함제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제조자는 안전성이 높은 제품으로 개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어백(Air Bag)이 장착된 자동차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출고된 에어백 미장착 자동차를 결함제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조자는 제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안전하게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지시나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표시만 하면 위험한 제조물을 마음대로 제조하거나 유통시켜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세탁조와 탈수조가 분리된 세탁기의 경우 뚜껑을 열면 탈수조의 회전이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된 세탁기가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을 때, 뚜껑을 열어도 정지되지 않는 세탁기에 아무리 그 내용을 설명하고 위험 경고 표시를 해 놓았더라도 그 제품은 결함제품으로 판정될 것이다.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것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①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이 갖추어야 할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흔히 불량품이라고 표현)
- ②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결함. 동일모델의 전제품이 같은 결함을 가지게 됨.
- ③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의 설명이나

지시, 경고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함.

(6)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부품의 결함으로 완성품도 결함제품인 경우,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피해자가 결정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배상 능력이 있는 완성품 제조업자가 될 것이다.

완성품 제조업자는 다시 부품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부품 제조업자는 책임의 한계나 배상의 비율, 지급방법 등 PL책임분담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확실하게 둘 필요가 있다.

(7) 면책

다음을 입증하면 제조자는 책임이 면제된다.(입증책임이 제조자에게 있음)

- ①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조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유통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며, 예를 들어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난을 당하여 유통된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② 결함 자체의 부인
제조물을 유통시킨 당시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유통된 이후에 다른 원인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제조물에 개조, 변형, 수리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당초 없었던 결함이 새로이 나타난 경우가 이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 ③ 비영리 목적으로 유통되었을 때
예를 들면 개발중인 시제품, 시편, 시험 개발품 등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데모(Demonstration), PILOT PROGRAM, 사내 한정품 등이 유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④ 법적 강제 기준의 준수
관련 법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해당 법규의

기준 자체가 결함이 있어 당해 제조물도 어쩔 수 없이 결함을 가지게 된 경우.

제조자가 관련법규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규(예 : KS)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였을 뿐이며, 강제기준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기준이란 법규에 정해진 기준대로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처벌받거나 제조·가공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설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⑤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자가 제품을 출하한 시점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 는 제품에 내재되어있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면한다. 이 조항은 업체로부터 요구된 조항이며, 유럽지역을 필두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⑥ 부품 제조업자의 면책

부품이나 원재료에 결함이 있었으나, 그 결함이 조립업체나 가공업체의 설계나 지시 및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책임을 면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품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 된다.

즉, 모기업의 설계나 지시에 제품의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부품이나 재료를 가공하였다면 그 제조업자는 위험을 방지하고 회피 하여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기업과 함께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된다.

(8) 시효

결함제품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납품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당해 제품과 관련한 품질기록들(예: 검사성적서, 공정이력서, 도면, 시방서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체에 축적되게 되면 건강에 해롭거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9) 기타

- ①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② 제조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효력이 없다.

3. 골판지 포장업계의 대책

먼저 골판지 포장업계에 소속된 여러 업종의 업체들도 PL법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부터 살펴보면, 법(안)의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동산”이란 민법 제 98조와 9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제외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므로 결국 정리해 보면 모든 업체가 해당한다는 결론이 된다.

원지(필프)제조업체, 부재료(잉크, 접착제 등)제조업체, 골판지 제조업체, 골판지 제작기계 제조업체, 골판지 도소매업체, 유통(창고, 보관, 수송등)업체, 무역업체등 모든 분야에 걸쳐 PL법이 적용되게 된다.

(1) 기본 대책

업종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할 대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전 예방대책(PLP : PL Prevention) : 결함에 의한 제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전담조직(부서나 TFT)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PL업무에 대한 책임을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게 함.
 - 해당 요원, 부서장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실시
 - 특히 사용상의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테마로 개선 제안활동을 실시
 - 법적인 규제나 규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품 Spec에 반영
 - 검사나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확실히 관리함. 이를 외주처리할 경우에도 외주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할 것.
 - 제품표시(사용/취급 설명서, 경고표시 등) 대책
- ② 사후대책(PLD : PL Defence)

- 수주생산형인 경우에는 발주서와 주문 관련 요구사항 (도면, 시방서 등)을 철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부품업체, 조립업체 등 관련업체와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을 계약이나 기타 문서의 형태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음.
- PL보험 가입(손해보험)
-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중임.
- 사고 발생시 대응체제
- 변호사 위촉, 현장확인, 제품회수, 소송준비 등
- 재발방지 대책 실시
- 원인규명, 개량, 대체품의 개발 등

(2) 기타 대책들

- ① 골판지는 외부 포장용기로 주로 사용되므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용도를 고려해볼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다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KS와 같이 제품의 외부 규격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 표준규격 (강도, 중량, 내마모성 등)을 준수하고 그 사실을 입증 (검사성적서 등)하여야 한다.
- ② 포장용기의 기능은 포장시의 품질을 포장 풀 때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포장용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장 이후의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용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물류단계의 부적합한 취급으로 결함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제품을 포장할 때 당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급시의 주의사항 (예: 갈고리 사용금지, 5단 이상 적재금지, 습도 00%이하 유지등)을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이나 물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되었음을 입증(결함 부존재의 항변)하면 면책된다.
- ③ 발주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라 제조, 가공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면책된다. 이 경우에는 발주자의 발주관련 설계도서나 지시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④ 시효기간이 제품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이므로, 관련 문서나 품질기록의 보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조립품은 시효가 진행중이나 부품은 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좀 더 여유있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의 골판지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내시장에 대한 대책과 외국의 제조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제품이 국내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부족하면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설명서나 경고 표시를 한글로 번역하고 형식도 국내기준에 따라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계약에 의거 배상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PL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수입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의 제조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내의 골판지를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그 나라에도 PL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자국의 수입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받을 것이며, 그나라의 수입업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업자에게 배상액을 되돌려 받으려 할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자회사나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소송에 피고가 될 것이므로 직접 당사자로서 패소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 할 것이므로), 두번째로 그 나라에 아직 PL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 나라의 법원에 우리나라의 PL법에 준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직접(대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소송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이기는 하나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가정이다.

이와같이 수출품의 경우에는 PL책임의 주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계약체결시 관련 내용을 확실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며, PL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4. 맺는 말

PL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

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주어 대응력을 갖춘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지금껏 되풀이 되고 있다.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보인다.

정부에서 법(안)을 입법 예고할 때에도 언급하였지만,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는 한 입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술 더 떠 지난 10월 2일자 모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PL 법을 한층 강화시킨 수정안을 제안하여 처리할 것

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아파트(부동산)도 제조물에 포함시키고, 손해를 입힌 제조물은 결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소비자의 인과관계 입증 불요)하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 등이다.

기업측으로는 반갑지 않은 규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 코스트가 상승하게 될 것이지만, 경영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항상 어려운 쪽으로만)이고,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고 보면, 이를 계기로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無限競爭時代의 골판紙包裝企業
生殘·經營革新戰略 指針書

〈産業研究院 發行〉

2000年代 골판紙包裝産業의 發展戰略

輕工業室長 經濟學博士 金 浚 炫
副研究委員 李 在 德 共著
研究員 權 烈 浩

高級米色模造
統計·圖表 總網羅
206P. 普及價 8,000원

購讀申請問議: 서울瑞草區方背洞1669 상산B/D 6F
韓國골판紙包裝工業協同組合
TEL: (02) 594-0381~4
FAX: (02) 594-1310